

2021년

아이돌봄

지원사업안내

포천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
031-532-2067



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

- ① 취업 한부모, 맞벌이 가정
- ② 장애부모 가정
- ③ 다자녀 가정 (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,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)
- ④ 기타 양육부담 가정

아이돌봄 이용 절차 * 정부지원 미대상자는 3번으로 이동

-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해 등록된 직장건강보험가입 한부모일 경우, 복지포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에서 정부지원 신청 가능
- 2 판정통지(우편 및 문자전송)
- 3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회원가입(idolbom.go.kr)
- 4 국민행복카드 등록
- 5 대기가점 등록 및 정기이용대기 신청
- 6 이용료 납부(국민행복카드 또는 예치금 충전으로 본인부담금 선납부)
* 예치금 충전방식에 따른 적립 시점 - 가상 계좌 입금: 신청 후 입금 즉시 적립
- 카드 결제: 신청 후 1~2일 후 적립
- 7 서비스 이용

아이돌봄서비스란?

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이하 아동(영아종일제는생후3개월~만36개월 영아)을 대상으로 아이돌봄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.

- * 이용시간 : 연중 24시간 원하는 때 언제든지 이용 가능
- * 돌봄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연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.

* 카드발급 문의처 : BC카드 1899-4651, 삼성카드 1566-3336, 롯데카드 1899-4282, KB국민카드 1599-7900, 신한카드 1544-886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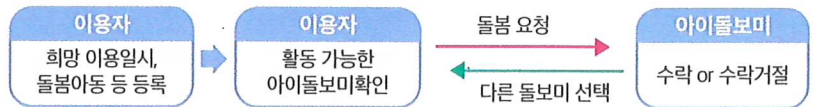
1 일시연계 서비스



이용자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PC나 모바일 앱을 통해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봄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(1회 2시간 이상 신청)

- ▶ 이용요금 : 정기이용 서비스 기준과 동일
- ▶ 이용 신청은 서비스 시작 3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가능 (단, 심야(22시~6시) 신청 불가)
- * 아이돌봄미의 사정에 따라 연계요청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일시연계 서비스 신청 절차



아이돌봄서비스 이용수칙

- 아이돌봄미 선생님은 가사활동을 지원하지 않습니다.
* 단, 종합형 돌봄서비스는 아동 관련 가사지원 가능
-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국민행복카드를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.
* 미납금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'즉시 이용제한' ▶ 미납금 납부 즉시 서비스 이용 가능
-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(24시간 이내 취소 포함)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시 1개월 이용이 제한됩니다.
- 아이돌봄미 선생님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 40시간 이내(부득이한 경우 주 최대 52시간) 근로 원칙과 휴게 시간이 적용됩니다.
*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기존 아이돌봄미가 아닌 다른 돌봄미가 연계되거나 돌봄미가 추가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.
- 아이돌봄미 선생님에게 부당한 언행 등이 3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2

시간제·종합형 돌봄서비스



임시보육, 놀이활동, 준비된 급간식 챙겨주기, 보육 시설 및 학교 등·하원, 안전·신변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서비스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가 병행됩니다.

종합형 돌봄서비스

시간제 돌봄서비스 내용에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추가로 제공합니다.

- ※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
- ※ 아동놀이공간 정리, 청소기 청소, 걸레질하기
- ※ 아동식사 및 간식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



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안내

유형	소득기준 [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]	시간제(시간당 10,040원)				종합형(시간당 13,050원)			
		A형		B형		A형		B형	
		정부지원	본인부담	정부지원	본인부담	정부지원	본인부담	정부지원	본인부담
가형	75% 이하 (3,657천원)	8,534원 (85%)	1,506원 (15%)	7,530원 (75%)	2,510원 (25%)	8,534원	4,516원	7,530원	5,520원
나형	120% 이하 (5,851천원)	6,024원 (60%)	4,016원 (40%)	2,008원 (20%)	8,032원 (80%)	6,024원	7,026원	2,008원	11,042원
다형	150% 이하 (7,314천원)	1,506원 (15%)	8,534원 (85%)	1,506원 (15%)	8,534원 (85%)	1,506원	11,544원	1,506원	11,544원
라형	150% 초과	-	10,040원 (100%)	-	10,040원 (100%)	-	13,050원	-	13,050원

- ※ (A형) '14.1.1.' 이후 출생 아동, (B형) '13.12.31.' 이전 출생 아동
- ※ 정부지원 시간 : 연 840시간 이내 ▶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
- ※ 돌봄 아동 추가 시 : (동일시간대 형제·자매 추가)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(2명) 25% 감액, (3명) 총액의 33.3% 감액

3

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



이유식먹이기, 질병소독, 기저귀갈기,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- ※ 가사활동 제외 (1회 3시간 이상 신청)



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안내

유형	소득기준 [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]	영아종일제 (시간당 10,040원)	
		정부지원	본인부담
가형	75% 이하 (3,657천원)	8,534원 (85%)	1,506원 (15%)
나형	120% 이하 (5,851천원)	6,024원 (60%)	4,016원 (40%)
다형	150% 이하 (7,314천원)	1,506원 (15%)	8,534원 (85%)
라형	150% 초과	-	10,040원 (100%)

- ※ 정부지원 시간 : 월 60시간~200시간 이내 ▶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
- ※ 돌봄 아동 추가 시 : (동일시간대 형제·자매 추가)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(2명) 25% 감액 (3명) 총금액의 33.3% 감액

4

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



보육시설, 유치원 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질환 및 감기·노반 등 유해성 질병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병원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를 특별 지원합니다. (1회 2시간 이상 신청)



- ※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에 돌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.
- ※ 해당 서비스 이용 시 병원처방전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 증빙이 필요합니다.



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안내

유형	소득기준 [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]	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(시간당 12,050원)			
		A형		B형	
		정부지원	본인부담	정부지원	본인부담
가형	75% 이하 (3,657천원)	10,243원 (85%)	1,807원 (15%)	9,038원 (75%)	3,012원 (25%)
나형	120% 이하 (5,851천원)	7,230원 (60%)	4,820원 (40%)	6,025원 (50%)	6,025원 (50%)
다형	150% 이하 (7,314천원)	6,025원 (50%)	6,025원 (50%)	6,025원 (50%)	6,025원 (50%)
라형	150% 초과	6,025원 (50%)	6,025원 (50%)	6,025원 (50%)	6,025원 (50%)

- ※ (A형) '14.1.1.' 이후 출생 아동, (B형) '13.12.31.' 이전 출생 아동
- ※ A형(가, 나), B형(가) :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 가능(① 또는 ②)
-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
- ※ A형(다, 라), B형(나, 다, 라) : 정부가 기본요금의 50%를 지원